긴급복지지원법

[시행 2025. 10. 23.] [법률 제20929호, 2025. 4. 22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 (기초생활보장과) 044-202-3058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 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위기상황"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 1. 18,, 2012. 10. 22,, 2014.

12. 30., 2018. 12. 11.>

- 1.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4.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5.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6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副所得者)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8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3조(기본원칙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다.
 - ②「재해구호법」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 용의 구호・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0. 4. 15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,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・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・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・단체와 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 •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5조(긴급지원대상자)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(이하 "긴급지원대상자"라 한다)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**제5조의2(외국인에 대한 특례)**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28.]

- 제6조(긴급지원기관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한다. 다만,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 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0. 1. 18.>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(이하 "긴급지원담당공무원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8. 12. 11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 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・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2. 30., 2018. 12. 11., 2025. 4. 22.>
 - 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 - 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겸임교사, 강사
 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 - 4. 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 - 5.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 지원인력
 - 6.「학원의 설립・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・강사・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・직원
 - 7.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- 8. 「청소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 - 9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- 10. 「평생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 - 11.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1, 7, 27.>
 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,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・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<신설 2018. 12. 11., 2021. 7. 27.>
 -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, 시간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8. 12. 11., 2021. 7. 27.>
 -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12. 11, 2021. 7. 27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7조의2(위기상황의 발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2. 30.]

- 제8조(현장 확인 및 지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2. 30.>
 -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개정 2015. 12. 29.>
 -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<신설 2015. 12. 29.>

[전문개정 2009, 5, 28.]

- 제8조의2(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)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 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
 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 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 - 3. 「보험업법」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험정보"라 한다)

[본조신설 2009. 5. 28.]

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. 금전 또는 현물(現物) 등의 직접지원
 - 가. 생계지원: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 - 나. 의료지원: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

- 다. 주거지원: 임시거소(臨時居所)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
- 라.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(入所)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마. 교육지원: 초・중・고등학생의 수업료, 입학금,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
- 바. 그 밖의 지원: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- 2.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
 - 가.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,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·단체와의 연계 지원
 - 나. 상담ㆍ정보제공, 그 밖의 지원
-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제1항제 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.<개정 2012. 10. 22., 2015. 12. 29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 제9조의2(긴급지원수급계좌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(이하 "긴급지원금"이라 한다)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"긴급지원수급계좌"라 한다)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, 이를 관리하여야한다.
 - 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・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12. 30.]

- 제10조(긴급지원의 기간 등)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, 같은 호 다목·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호 다목·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13.>
 -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·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한 번 실시하며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.
 -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・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,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4. 12. 30.>
 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 1. 18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11조(담당기구 설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·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삭제 < 2012. 10. 22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·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 7. 24.>
 - 1.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
 - 2.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
 - 3.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
 - 4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 - 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 - 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3. 해당 시・군・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
 - 4. 해당 시・군・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 - ④ 시・군・구에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**제13조(사후조사)**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·국세·지방세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0. 1. 18., 2011. 7. 14.>
 -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 4조와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1. 7. 14.>
 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⑧ 제3항·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, 5, 28.]
- **제14조(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)**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.
 -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5조(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16조(이의신청)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・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17조(예산분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 5. 28.]

- 제18조(압류 등의 금지)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.
 -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<신설 2014. 12. 30.>
 -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개정 2014. 12. 30.>

[전문개정 2009. 5. 28.]

제19조(벌칙)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 12. 2.> [전문개정 2009. 5. 28.]

부칙 <제20929호,2025. 4. 22.>(건강가정기본법)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7호 중 "건강가정지원센터"를 "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"로 한다.

③부터 ⑩까지 생략